

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431호)에 따라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여야 하나,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하여 본 개정 고시를 통하여 재검토키한을 설정하고 근거 조문 변경 등 일부 개정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검토키한 설정으로 규정 의무 이행(안 제6조 신설)

- 1) 2022.7.1.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키한 설정

나. 기타 개정사항

- 1) 근거 법령인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의 위임 조항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5조제1항”을 “제1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기준은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15조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